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

<20.7.29.(수). 지방교육재정교과>

□ 추진 배경

- (국립학교 수업료) 고교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우리부 관할 국립 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가 면제되어 관련 법령 정비 필요
- (학교발전기금) 일선학교의 학교발전기금 관리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학교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운용·공개 및 지침 관련 사항 등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학교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제10조)」으로 정하는 국립고등학교* 수업료 징수 관련 사항 삭제 필요
- * 교육부 관할 국립고등학교는 서울대학교 부속 고등학교 포함 전체 11개교이며, 전 학교가 무상교육 대상인 일반고등학교
- (학교발전기금) 일선학교 업무부담을 경감하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 제도개선 필요
- (효율성) 법령으로 정하는 학교회계와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운영 방식이 상이하여 관리상 혼선 및 업무부담 가중
- (투명성) 학교발전기금회계가 일선 학교에서 학교회계에 준하여 책임감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 필요
- (안정성) 학교발전기금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 일선학교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나, 해당 지침의 법적근거 부재
- * 표준화 된 학교발전기금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립학교는 직접 지침 수립·시행 중이며, 공·사립학교는 교육부→시·도교육청으로 학교발전기금 관련 지침 표준(안)을 시달하여 지원

□ 주요 개정 내용

【1. 입학금 및 수업료】

- (관련 조항 삭제) 고교무상교육 추진에 따라 국립고등학교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납부 관련 규정 삭제(제6~10조)

【2. 학교발전기금】

- ① (에듀파인 의무사용) 학교(교비)회계와 같이 K-에듀파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회계 처리 조항 신설(제47조의2)
 - ※ 학교회계(공립)는 시·도별 규칙, 교비회계(사립)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K-에듀파인)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
- ② (운용 책임성 제고) 현재 지침으로 정하고 있는 학교발전기금 운용관련 주요 공통사항은 법령으로 규정
 - (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와 동일하게 회계 종료 후 20일 내 폐쇄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48조의2)
 - ※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는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령 상 학교발전기금은 별도의 폐쇄기간 미지정
 - (정보공개) 학교운영위원장이 학교발전기금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 제고(안 제50조의2)
 - * 기금운용계획, 결산과 분기별 접수 및 집행내역
 - ※ 학교회계 및 교비회계는 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1년 이상 공개하도록 규정
- ③ (운영 편의성 개선) 학교발전기금 운영 편의성 및 학교회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복식부기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49조)
 - ※ 학교회계도 당초 복식부기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일선학교에서 복식부기 운영의 어려움이 많아 학교별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완료
- ④ (용도 명확화) 학교발전기금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용도 제한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①)

※ 학교발전기금을 학생 교육, 복지 및 안전 등 학생 복리에 직접 활용하도록 학교발전기금 지침 표준(안)을 통해 안내 중이나 학교기본경비, 교직원 복지, 인건비 등 간접적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어 법령을 통해 명확히 규정 필요

⑤ **(제도적 기반 강화)**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권한사항과 학교발전기금 지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54조의2②, ③)

- 시·도교육청이 각각 학교발전기금 운용 지침을 마련하나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시·도의 권한 및 지침의 법적근거 규정 필요

※ 학교회계에 대한 권한 및 지침은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3. 시행일 관련 부칙】

○ 고교무상교육 전면시행일과 학교발전기금의 회계연도 개시일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21년 3월1일에 시행되도록 부칙으로 규정

□ 향후 일정

○ 기본계획(법령안) 결재(7월) → 규제심사 사전협의(8월) →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9~10월, 40일) → 법제심사(11월) → 관보 게재(12월)

붙임1

상위법 등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기능)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1조(시정명령)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의·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③ 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마다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1. 발전기금에 대한 결산
2. 제1호에 따른 결산 결과의 관할청 보고 및 학부모 통지

⑨ 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 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붙임2

학교회계 복식부기 관련 규정 현황

시 도	수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서 울	제22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20]
부 산	제23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① 원장 또는 교장은 해당 유치원 또는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 또는 교장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에 따라 결산서를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때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재무보고서 결산심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대 구	제23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고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2.17, 2012.12.31>
인 천	제21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6.15]
광 주	제21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제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03.15..2017.12.19.>
대 전	제24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5. 1>
울 산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3.12 규244>
세 종	제24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경 기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5.17. 규679>
강 원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4.30]
충 북	제24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4.6>
충 남	제24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그 결과를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 북	제23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31, 2013. 12. 30, 2015. 2. 27>
전 남	제22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①학교의 장은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15> ② 교육감은 재무보고서 작성의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경 북	제24조(재무회계의 결산)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단,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 3. 22>
경 남	제23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며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2012. 2. 2. 교규679> ② 학교의 장이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붙여서 제출할 수 있다. <개정2012. 2. 2. 교규679, 개정 2012. 11. 15. 교규698> ③ 운영위원회의 재무보고서 결산심의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 주	제24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재무보고서 작성의 효용성을 고려하여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2. 4. 19>
국 립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붙임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7. .

국무위원 유은혜
(교육부장관)

1. 개정이유

고교무상교육에 맞추어 국립고등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규정을 정비하고,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발전기금회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고교무상교육 정책의 도입에 따른 국립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관련 조항 정비(현행 제6조에서 제10조 삭제)
- 나. 학교발전기금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운용하도록 함(안 제47조의2)
- 다. 기금의 출납폐쇄기한 신설(안 제48조의2)
- 라. 기금회계의 복식부기를 임의규정으로 개정(안 제49조)
- 마. 기금의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0조의2)
- 바. 기금 용도 제한 및 회계요령에 대한 위임 규정 신설(안 제54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예정)

교육부령 제 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7조의2 및 제4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출납폐쇄기한)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로 폐쇄한다.

제49조 중 “처리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50조의2 및 제5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공개)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50조에 따른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회계관리요령) ① 기금은 학생 교육, 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1. 업무추진비, 교직원 업무·편의시설, 교직원의 복지비, 인건비, 여비 등 교직원을 위한 용도
2.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용도
- ② 기금의 기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할 때 어떠한 특혜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①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국립의 고등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국립 고등학교의 장이 정한다.	<삭 제>
②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립 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과 같은 지역(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읍·면·동을,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동에 공립 고등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공립 고등학교가 있는 인근의 읍·면·동을 말한다)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각 국립 고등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업료와 입학금을 공립 고등학교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7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감액) ①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해당 국립 고등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2. 영 제104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등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과 체육 등 특기 신장이나 학업 장려를

<삭 제>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면액이 이 호에 따른 총감면액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와 입학금을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기간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지난 기(期) 또는 지난 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기(期)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⑤ 결석일수에 대해서는 수업료

를 감액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학년도마다 4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와 다르게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국립 고등학교에서 국립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국립 고등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전입하는 국립 고등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국립 고등학교에서 공립·사립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국립 고등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제1항에 따른 수업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입

<삭 제>

하는 공립·사립 고등학교에서 전학생에게 징수할 수업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3. 공립·사립 고등학교에서 국립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전입하는 국립 고등학교에서는 제1항에 따른 수업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산정한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출하는 공립·사립 고등학교에서 전학생에게 징수하는 수업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4. 국립 고등학교는 학생이 2회 이상 전학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입학금을 중복하여 징수할 수 없다.

④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

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제9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징수일) ① 수업료 징수일은 국립 고등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기 또는 해당 달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 징수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국립 고등학교의 장은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내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징수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 보조금 등의 지급일 후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수업료나 입학

금이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 또는 징수한다.

1. 정당한 수업료나 입학금보다

<삭 제>

<삭 제>

많이 납부된 경우: 차액을 정산하여 반환

2. 정당한 수업료나 입학금보다 적게 납부된 경우: 차액을 정산하여 징수

3. 징수하지 않아야 할 수업료나 입학금이 납부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전부 반환

② 학생이 국립 고등학교에서 공립·사립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나 입학금을 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국립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학기 또는 해당 기의 시작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또는 해당 기의 시작일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한다.

3.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고, 그 나머지에 대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이나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제49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

<신 설>

제47조의2(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회계의 처리) 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8조의2(출납폐쇄기한)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로 폐쇄한다.

제49조(회계방법) 기금의 회계는 ----- 처리할 수 있다.

제50조의2(공개) ①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을 분기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제50조에 따른 결산을 회계연도 종료

<신 설>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의2(회계관리요령) ① 기금은 학생 교육, 복지 및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용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1. 업무추진비, 교직원 업무·편의시설, 교직원의 복지비, 인건비, 여비 등 교직원을 위한 용도

2.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일반수용비 등 기본경비 용도

② 기금의 기탁과 관련하여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할 때 어떠한 특혜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이, 공립·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정한다.